

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김정현

지역법제 연구 14-16-⑪

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김 정 현



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US military service**

연구자 : 김정현(부연구위원)
Kim, Jung-Hyun

2014. 12. 15.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 관련 사건으로 병영부조리와 군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
-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군복무 관련 법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II. 주요 내용

- 미국의 군복무제도의 변천과 현황
 - 미국의 군복무제도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변화를 겪다가, 닉슨 행정부 이후 모병제로 전환함.
- 미국의 군복무법제의 체계와 내용
 - 입대 제한 자격 엄격하게 법률로써 규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의 입대를 사전 차단
 - 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
 - 군복무 규율 유지를 위해 처벌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군복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병영부조리 금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III. 기대효과

- 향후 우리의 군대 내 병영부조리의 개선과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어 : 미국의 군복무제도, 군인지원제도, 군복무법제, 입대제한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Recent military affairs that happened in a row are increasing social interests in irrationality of the military and human right improvement of the servicemen
- It requires further research on military service legislation of United States where the advanced military culture is cultivated

II . Contents

- The historical changes and status of US military service system
 - US military service system experienced the both selective service and volunteer military system. Then it changed to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since Nixon's administration
- The system and contents of US military service legislation
 - The strict law on limited qualification for joining the army prevents a person with problem from joining the army in advance
 - To provide the support system for servicemen instills the pride of military service
 - The strict regulation in penalty clause for maintaining discipline during military service

III. Expectation

- This research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legislation that will be provided to improve the military irrationality and guarantee the human right of servicemen

➤ Key Words : US military service system, the support system for servicemen, US military service legislation, limited qualification for joining the army.

목 차

요약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 2 장 미국의 군복무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13
제 1 절 군복무제도의 변천과정	13
I. 낙수행정부 이전의 군복무제도	13
II. 낙수 대통령의 모병제 도입	15
제 2 절 군복무제도의 현황	18
I. 병역유형	18
II. 병무행정	18
III. 지원제도	18
IV. 등록제도	23
V. 병력규모	25
VI. 병력조직	26
VII. 군사훈련기간	26
VIII. 예비군	27

제 3 장 미국의 군복무법제 체계와 내용	29
제 1 절 군일반법(General Military Law)의 체계	29
제 2 절 군일반법의 주요내용	31
I. 입 대	31
II.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책	33
III. 현역복무	34
IV. 군복무 규율 유지를 위한 처벌조항	35
V. 평 가	53
제 4 장 한국의 군복무법제에 대한 시사점	55
제 1 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복무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55
I.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	55
II.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56
제 2 절 군복무법제 개선방향	63
제 5 장 결 론	65
참 고 문 헌	6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연이어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건¹⁾과 28사단의 윤일병 구타사망사건²⁾으로 말미암아 군대 내 병영부조리의 개선과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군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를 2014년 8월 출범시켰고,³⁾ 동년 12월 18일 22개 혁신과제를 제안했다. 이 중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정착을 위해 「장병권리보호법」 제정을 통한 반인권 행위자 처벌 강화 및 軍 사법제도 공정성·투명성 제고·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병영부조리 관련 사건·사고들을 개인의 군복무부적응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치부하는 데 그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개인의 복무부적응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격리된 곳에서 엄격한 규율의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군의 특수한 환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병영 상황이 결합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1) 2014년 6월 21일 대한민국 육군 22사단 55연대 13초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부대 병장이 K-2 소총과 실탄 60여 발을 소지하고 무장 탈영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난사해 사망 5명, 부상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 2014년 3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대한민국 육군 28사단 소속 병사 6인이 후임 병 윤일병을 상대로 수차례 집단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가해 윤일병이 사망한 사건으로 동년 10월 30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사건의 주범인 이모병 장에 대하여 징역 45년을 선고한 상태이다.

3)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실무위원 72명과 자문위원 20명, 군 관계부서 등 10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분야에 따라 '복무제도 혁신분과', '병영문화 환경 개선 분과', '리더십 및 윤리 의식 증진 분과'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병영부조리 관련 사건·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은 군대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고, 병영 내에서 장병들이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받으며, 군 운영 전반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 가운데 군대 내 환경개선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좌우되는 사안인 반면에, 군인의 인권보장과 군대 내 만연한 병영부조리 근절은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도 군대 내 부조리를 막기 위해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5673호), 병영생활규정(국방부훈령 제411호), 병영생활 행동강령⁴⁾ 등이 존재하나, 이는 명령 또는 내부규율로써 규범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 제정을 통해 강제성을 대폭 강화해 강력한 법적 규범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법제개선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존의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군인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둘째,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군인들의 인권보장과 군복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군대 내 병영부조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방부는 수년 전에도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 지난 2006년 12월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⁵⁾ 200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이행수단이 미비해 법안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의 법률안은 군인권보장을 위해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군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제한

4)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접 금지, 2.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3.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 금지, 4.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군기 위반행위 금지

5)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5374> 국방부 공고제2006-79호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기존 군인복무규율을 법률에 규정한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었다.⁶⁾

이후에도 군인권과 관련한 법제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국회에 군인사법 개정안과 새로운 입법대안 등이 계류 중이나,⁷⁾ 아직까지 실제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는 군인복무규율과 병영생활행동강령을 법률로 격상시킨 군인복무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장병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국방부가 8년 전과 동일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군인복무 관련 법제 개선안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법제 개선안 도출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어떠한 제도를 통해 군대 내 부조리를 개선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병영 내 군기를 유지하면서도,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군복무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군대 내 병영부조리의 개선과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미연방법률 제10편 군대(U.S. Code: Title 10 - ARMED FORCES)은 군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하고 있고, 이 가운데 A편이 군일반법(General Military Law)이다. 군일반법은 101조부터 2925조까지로 이

6) 당시 법률안에 대한 비판내용을 정리한 기사로는 시민사회신문, “군인복무기본법 실효성 의문”, 2007.5.28일자. <http://ingopress.tistory.com/198> (최종접속 2014.12.1) 참조.

7) 현재 국회에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군인권기본법안(심상정의원 등 11인), 군인권보호법안(안홍준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등이 여러 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제 1 장 서 론

루어져 있다. 이 중 제2부 병력(PART II-PERSONNEL)^{8)이} 군의 인사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동법의 체계와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연구함으로써 향후 군복무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 연구 및 비교법적 연구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조사 연구를 통하여 관련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국내 및 외국의 기존 문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한다. 둘째,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군복무법제를 분석하여 입법론적 시사점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회의 또는 워크숍을 통하여 공무원, 학계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보고서의 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

8)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0 subtitle-A/part-II>

제 2 장 미국의 군복무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제 1 절 군복무제도의 변천과정

I . 닉슨행정부 이전의 군복무제도

미국은 닉슨 행정부 시기인 1971년 수정병역법(Public Law 92-129: Amendments to the Military Services Act of 1971)을 통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모병제가 정착되기까지 미국의 역사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반복하였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시민군이 주력부대였으나, 이로써 불충분해 일부 충원을 해 전쟁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충원이 불가능해지자, 대륙회의⁹⁾는 추첨에 의한 선발 징병제를 제안했고, 이는 징병제의 모태가 되었다. 1783년 처음으로 징병제를 시행할 당시의 징집대상은 18~35세의 독신 백인 남성에 한했고, 기혼 백인남성은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흑인남성은 신분상 노예였으므로 징집대상이 되지 않았다. 서양에서 노예는 군복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전통적 태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이루어진 후 군복무제도는 지원제가 되었으나,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징병제법을 제정하였다. 징병제법은 당시 남군 의회가 먼저 통과시켰으며, 이후 1863년 3월 3일 링컨 대통령이 ‘등록법(The Enrollment Act)’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이는 기존의 1862년 제정된 병역법(Militia Act of 1862)을 대체한 것이기도 했다. 20세부터 45세까지의 남성이 병역대상자였다. 당시의 징병제법은 병역면제권¹⁰⁾을 구매하여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9) 1774년 미국에서 13개주 대표에 의하여 창설된 미국 독립을 위한 최고회의이다.

10) 당시 3백 달러 가량의 현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징역을 면제해 주었다.

본인의 병역을 대리할 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¹¹⁾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의 개전 후 월슨 대통령은 ‘의무병역법 (Selective Service Act of 1917)’을 도입했다. 남북전쟁 당시의 징역법과 달리, 보상금이나 대리복무를 허용하지 않았다. 최초에는 입영대상자가 21세부터 30세까지였으나, 의회의 법개정을 통해 18세에서 45세까지의 모든 남성이 병적에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당시 육군의 72%가 징병으로 이루어졌다.¹²⁾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대규모 군대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미국은 의무병역법을 폐지했다.¹³⁾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1840년 9월 16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무훈련법(STSA: Selective Training and Service Act of 1940)’을 서명함으로써 징병이 재개되었다. 동법에 따라 21세부터 36세까지의 남성이 징집대상이 되었다.¹⁴⁾ 미국 역사상 평화 시기¹⁵⁾에 이루어진 최초의 징병제법이었다. 연합군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미 의회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징집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징집은 1947년 3월 31일에 중지되었다¹⁶⁾

그러나 점차 국제정세가 악화되고, 적정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자원의 지원이 약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자, 트루먼 대통령은 징집의 재개를 요청하였다. 미국 시작으로 1950년 6월 24일 북

11) http://en.wikipedia.org/wiki/Enrollment_Act 2014.12.1. 최종접속

12) http://en.wikipedia.org/wiki>Selective_Service_Act_of_1917 2014.12.1. 최종접속

13) Cutler, Frederick Morse, Military Conscrip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The Historical Outlook*, 14(5), 1923, pp.170-175. 김주찬/ 선종렬, 앞의 글, 2008, 9면에서 재인용

14) http://en.wikipedia.org/wiki>Selective_Training_and_Service_Act_of_1940 2014.12.1. 최종접속

15)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지만, 미국의 참전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1941년 12월 7일 이루어졌다.

16) Rostker, Bernard D, *The Evolution of the All-Volunteer Force*, Santa Monica: RAND, 2007. 김주찬/ 선종렬, 앞의 글, 9면에서 재인용

한이 남한을 침략하였고, 3일 후 미 의회는 징집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¹⁷⁾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에도 미소간의 대립으로 인한 냉전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징집도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월남전에 대한 반전 여론이 증대되면서 징집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었고 1971년 9월 28일, 닉슨 대통령은 ‘수정병역법(Public Law 92-129: Amendments to the Military Services Act of 1971)’에 서명함으로써 모병제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평시라도 18세 이상은 병적에 등록되며, 전시상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징집할 수 있다.

II. 닉슨 대통령의 모병제 도입

닉슨 대통령이 병역제도를 기존의 징병에서 모병제로 바꾼 결정적 계기는 미국을 전쟁의 늪에 빠뜨린 베트남전쟁이었다. 베트남전쟁은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장장 15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었는데,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었고 미국의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의 전황은 사실상 미국의 패배라는 분위기였다. 이로 말미암아 베트남 전쟁 참전의 명분과 성과에 대해 미국 내에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베트남 전쟁이 징병제의 공평성과 유용성에 대해 논란을 야기한 것은 당연했다.¹⁸⁾ 이러한 논란이 반전 여론에 편승하여 확산되면서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징병제 존폐와 개편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징병제 존폐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반전여론에 힘입어 닉슨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17) Magruder, Carter B, *Report of the Task Force on the Structure of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Washington D.C., 1967. 김주찬/ 선종렬, 앞의 글, 2008, 9면에서 재인용

18) Cooper, Richard V. L., *Military Manpower and the All Volunteer Forc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77, p.42. 남궁곤/ 김근혜, 미국의 모병제 도입 연구: 닉슨 행정부의 수정병역법(1971) 입법적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2. 124면에서 재인용

때문에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사안들은 낙수 행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이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 징병제 개편 필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실제 성과를 내진 못했다. 징병제 개편의 일환으로 모병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시기는 존슨 대통령 시기부터였다.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로의 이행 필요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입장이 나왔다. 가령, 1966년 미국 경제협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는 병력자원조달 방안을 위한 제안을 했다. 이에 따르면 비용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이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1967년 시카고 대학에서 징병제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려 모병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⁹⁾ 같은 해 하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은 다른 하원 의원 5명과 함께 “징병제를 종결하는 방법”(How to End the Draft: The Case for an All Volunteer Arm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모병제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시간은 5년이라고 했다.²⁰⁾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자, 존슨 대통령은 1967년 병역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복수의 공식자문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ssion)와 입법 자문위원회(Legislative Advisory Commission)였다. 전자의 위원회 위원들은 존슨 대통령이 임명했고, 후자의 위원회는 민간 자문단이었으며 군의 인력조달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두 위원회는 징병제의 대안을 찾고자 했으나, 대안으로 모병제를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존슨 대통령도 1967년 의회에 모병제를 원칙적

19) Bachman, Jerald G., John D. B. Blair/David R. Segal, *The All-Volunteer Force: A Study of Ideology in the Militar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7, pp.10-11. 남궁곤/김근혜, 앞의 글, 124면에서 재인용

20) 남궁곤/김근혜, 앞의 글, 124면.

으로 찬성하지만 비용과 실행측면에서 입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냈다.²¹⁾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과 달리 모병제를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닉슨 대통령은 모병제의 필요성에 대해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모병제 전환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미국의 모병제 전환은 닉슨 독트린²²⁾으로 명명되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²³⁾ 더 이상 다른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외교정책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모병제로의 전환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닉슨대통령은 징병제 개혁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조언을 했던 관료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입법과정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여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병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²⁴⁾

1969년 닉슨 대통령은 징병제 폐지를 위해 이른바 ‘케이츠 위원회’라 불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케이츠 위원회의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정 기간 사병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군복무의 매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 모병제는 군복무에 대한 인식을 대대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셋째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취업기회의 균등과 고용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 현제의 징병제는 형평성을 구현하기 어렵다.²⁵⁾ 즉 케이츠 보고서는 모병제를 경제적·효율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Bachman, op.cit., 1977, p.11. 남궁곤/김근혜, 앞의 글, 2012, 124-125면에서 재인용

22)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밝힌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이며, 1969년 7월 25일 괌(Guam)에서 그의 새로운 대아시아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1970년 2월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하여 닉슨독트린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3) 앞의 글, 125면.

24) 앞의 글, 125면.

25) 오동렬, 『각국의 병역제도 연구』, 병무청, 1990, 107면, 204면.

게이츠 보고서가 발표된 후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여 1973년 모병제가 전면 도입되었다.²⁶⁾

제 2 절 군복무제도의 현황

I. 병역유형

미국은 전쟁 발발 시 원활한 병력수요를 위해 의무병제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낙순 행정부 시기인 1971년 수정병역법(Public-Law 92-129: Amendments to the Military Service Act of 1971) 제정을 통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병역제도를 전환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II. 병무행정

미국의 병역제도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에서 주관하는 지원제도(Voluntary System)와 선병청(Selective Service System)²⁷⁾이 주관하는 전시대비 징병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²⁸⁾ 국방부는 지원병 제도를 주관하고 있으며, 선병청은 국가 비상사태 시 즉각 동원 가능한 병역 등록, 등급판정, 체제유지를 위한 징병제도를 주관하고 있다.

III. 지원제도

1. 지원자격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남녀 구별 없이 군 입대 결격 사유 없는 자는 모두 지원자격이 있다. 지원자는 현역병 · 예비군부대 또는 주(州) 방위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6) 정혜인, “모병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Lawyers association journal. 63(4), 법조협회, 2014, 85면.

27) <https://www.sss.gov/default.htm>

28) 김문성, 『병무행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병무청 연구보고서, 2005, 62면.

2. 지원연령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남녀 모두 입대할 수 있다. 최대 입대 제한 연령은 육군은 35세, 해군은 34세, 공군은 27세, 해병대는 28세, 해안 경비대는 27세이다.

3. 선발시스템

지원병의 선발시스템은 크게 장교 선발시스템과 부사관/병(enlisted) 선발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

(1) 장교(officer) 선발시스템

장교 선발은 기본적으로 사관학교와 학군사관, 사관후보생, 직접임관(direct commission)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현지임관(battle commission)은 주로 규모가 큰 전쟁 때에만 도입된다. 장교 인원은 사관학교 출신이 약 20%를 차지한다. 학군사관의 경우에는 장교 인원의 약 30-40%를 차지한다. 2010년 기준으로 학군사관은 미 육군 신규 임관인원의 38.5%, 미 해병대의 17%, 미합중국 해군의 16.7%, 미 공군의 38.1%로 전체 군 장교 신규 임관인원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학사사관과 간부사관을 합친 사관후보생(OCS: Officer Candidate School)²⁹⁾이 장교 인원의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직접임관이 차지한다.²⁹⁾

29) 김주경, “미국 군복무제도의 변천과 현황”,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4, 6면.

<표1> 미국장교선발시스템³⁰⁾

미국장교선발시스템	
사관 학교	미국육군사관학교(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 미국 육군사관을 양성하는 기관
	미국해군사관학교(United States Naval Academy) - 미국 해군사관을 양성하는 기관
	미국공군사관학교(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 미국 공군사관을 양성하는 기관
	해안경비대사관학교(United States Coast Guard Academy) - 미국 해안경비대 사관을 양성하는 기관
	미국상선단사관학교(United States Merchant Marine Academy) - 전시에는 해군에 징발되고 평시에는 주요 교역의 수단이 되는 상선의 사관을 양성하는 기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 군의관을 양성하는 기관
학군 사관	육군학군사관(Army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미국 272개 대학에 설치
	해군/해병대학군사관(Naval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미국 150개 대학에 설치. 해안경비대에는 학군사단이 없음.
	공군학군사관(Air Force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 - 미국 77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30) 김주경, 앞의 글, 6-7면.

미국장교선발시스템	
사관 후보 생	사관후보생(Officer Candidate School)은 보통 줄여서 OCS라고 함. 다만 공군은 OTS(Officer Training School)라고 지칭함. 부사관이나 병으로 근무하다가 학사 학위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존재함.
현지 임관	군의관, 군종장교, 법무관 등을 선발하는 방법. 과학자나 약사, 간호사도 이 과정으로 선발하는데 자신들의 병과 외에는 권한이 없음.
기타	해병대 소대장반후보생(Platoon Leaders Class)
	해군 조종장교후보생(Aviation Officer Candidate School)
	해군 조종예비장교후보생(Aviation Reserve Office Candidate)
	해군 조종후보생(Naval Aviation Cadet)
	해병대/해군/해안경비대 간부사관(Limited duty officer)
	준사관(Chief Warrant Office)

(2) 부사관/병(enlisted) 선발시스템

미군은 부사관후보생 과정이 없이 병부터 시작해서 진급을 통해 병장(Sergeant)으로 올라간다. 훈련병(E-1)부터 시작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대학에서 60학점 이상을 수료한 경우 상병(PCF)부터 시작하고 120학점 이상인 경우 상병으로 시작하여 6개월 뒤 병장으로 진급이 가능하다.³¹⁾

병은 보통 고졸 이상을 받아들인다. 육군의 경우 18-35세, 해군은 18-34세, 공군은 18-27세, 해병대는 18-28세이다. 해안경비대는 18-27세이나 특정 학교를 거친 경우엔 32세까지 인정된다. 17세인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가를 받으면 자연등록프로그램(Delayed Entry Program)을 거쳐 입대할 수 있다. 지역 내의 군사 관련 활동을 이수하거나 스포츠 활동 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³²⁾

31) 앞의 글, 8면.

32) 앞의 글, 8면.

등록을 마치면 신병은 군사특기(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를 부여받은 뒤에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흔히 부트캠프(boot camp)라고 한다. 각 군종은 기초군사훈련을 차별화하고 있다. 해병대 같은 경우엔 비보병 특기에게도 특기학교를 가기 전에 해병대전투훈련과 같은 보병 특기훈련을 받게 한다. 비전투 병과라도 기초전투훈련은 받아야 한다.³³⁾

고졸 이하는 훈련병(E-1) 봉급을 받지만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이등병(E-2) 봉급을 받는다. 학사 이상이면 육군의 경우 상병 스페셜리스트(E-4)의 봉급을 받는다.

사병의 계급은 고졸자의 경우 E-1(Private:○ 등병)으로 시작하며, 60학점 이상 대학학점이 있는 경우 PFC(Private First Class:상병)으로 시작하며, 120학점 이상 대학점이 있는 경우 상병이후 6개월 이내에 보병 병과 Corporal(병장) 및 행정병과 Specialist-4(병장)으로 진급이 가능하다.³⁴⁾

4. 복무연한

현역병의 복무연한은 육군과 해병대는 3년이고, 해군과 공군은 4년이다. 현역에 지원하여 2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긴급예비군에 소속될 경우에는 2년을 더 복무하게 되나, 예비군부대에 편성되지 않은 사람은 1년을 더한 3년 동안 개별동원 통제요원으로 긴급예비군에 편성되어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비군은 긴급예비군과 대기예비군 및 퇴역예비군으로 구분된다. 예비군부대 지원자는 6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다음 처음 4년간은 긴급예비군으로, 그리고 나머지 2년간은 대기예비군으로 총 6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긴급예비군에 소속된 자는 거주지 변경 등이 통제된다. 특히 3개월간 기초 훈

33) 앞의 글, 8면.

34) 김문성, 『병무행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병무청 연구보고서, 2005, 63면

련을 받은 특기요원은 대기예비군으로서 직장이나 거주 이전이 통제된 상황에서 8년간 복무하여야 한다.³⁵⁾

정원제인 긴급예비군에 편성된 자도 정규군인과 마찬가지로 급료를 받으며, 퇴역예비군도 연금 미수령자일 경우에는 간부요원으로 편성되어 급료를 받는다. 예비군 훈련은 연간 1백92시간의 집체교육과 14일간의 동원훈련으로 이루어지며, 복무형태 및 신분에 따라 훈련의무 연한과 훈련시간을 차별화하여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³⁶⁾

IV. 등록제도

미국의 병력제도는 모병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위기상황, 비상사태, 전쟁 상황에서의 의무병제 전환에 대비하여 등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18세가 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병역 징집 대상자 명부(Selective Service System Registration)에 등록할 것을 권장 받는다. 미등록자에게는 정부 학자금대출, 공무원 임용, 국영 4대 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많은 경우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얻고자 할 때 입대를 강요받는다.³⁷⁾

등록 대상자는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이다. 미국 시민은 물론이지만 영주권자도 꼭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유학생, 방문자, 외교관과 그 가족, 상사지사 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거주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자는 18세 생일을 맞으면 30일 이내에 등록서류를 선병청에 제출을 해야 한다. 적령자로서 이민을 온 사람도 정착과 동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6세를 넘긴 사람은 추후 등록을 할

35) 김주경, 앞의 글, 8-9면.

36) 앞의 글, 9면.

37) 김문성, 앞의 글, 62면.

수 없다. 적령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³⁸⁾

적령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시에 거부를 당할 수 있고 연방정부의 학비보조,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병청에서는 적령자의 명단을 갖고 있는데, 선병청은 차량국, 이민국, 교육국 등 여러 정부조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한다.³⁹⁾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징역병 시행을 거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징병제를 발전 시켜왔다. 18세와 19세 남성도 등록 대상자이지만 소집에서는 제외 된다. 그리고 20세에서 25세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Priority라고 한다. 우선 20세부터 징집을 한다. Priority 1번이다. 징집대상자의 선정은 추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0세 남성에서 충분히 징집한 후 21세 남성을 대상으로 징집을 하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징집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⁴⁰⁾

징병으로 출정을 하면 부양가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사람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III-A Classification - “hardship to dependents”라는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⁴¹⁾

미국은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제의 목적은 국가위기, 비상사태 또는 전쟁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18-26세 사이의 모든 남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38) 김문성, 앞의 글, 62면.

39) 김주경, 앞의 글, 9면.

40) 앞의 글, 9면.

41) 앞의 글, 10면.

하여 등록제도와 공무담임권, 시민권, 대학입학 허가, 학생 융자금, 직업훈련 혜택, 운전면허증 발급업무 등을 연계시키고 있다.⁴²⁾

지원제도에서의 지원자격은 남녀 구별없이 군 입대 결격사유가 없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다. 지원에 의해 18세부터 군에 입대할 수 있으며, 현역병, 예비군, 주방위군 중 자기가 복무할 군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자가 현역에 근무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예비군과 주 방위군에 근무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병역제도는 선택적 지원병제도라고 평가된다. 연령 제한은 장교(officer)는 29세까지, 사병(Enlistment)은 35세까지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55세까지도 가능하다. 선발 방법은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를 병행하며, 성적에 따라 2년부터 4년까지의 복무기간과 주특기, 복무지 선택 등의 기회가 부여된다.⁴³⁾

V. 병력규모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잠재병력은 17세에서 62세까지의 인구로 145,212,012명이며, 현역으로 복무 중인 인구는 1,430,000명이고, 예비역은 850,880명이다.

2013년 미국 병력규모 ⁴⁴⁾ (단위:명)					
총인구	잠재병력	복무가능인구	적령기도달인구	현역	예비역
316,668,567	145,668,567	120,022,084	4,217,412	1,430,000	850,880

42) 김문성, 앞의 글, 62면

43) 김문성, 앞의 글, 63면

44) <http://www.globalfirepower.com> 사이트 통계 인용

VII. 병력조직

현재 미국군은 미국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 미국 육군(USA, U.S. Army), 미국 해군(USN U.S. Navy), 미국 공군 (USAF, U.S. Air Force), 미국 해병대 (USMC, U.S. Marine Corps), 미국 해안경비대 (USCG, U.S. Coast Guard), 미국 주 방위군(USNG, U.S. National Guard)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미국 해안경비대는 평시(平時)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이나 전시(戰時)에는 해군의 지휘를 받는다. 그리고 미국 주 방위군은 각 주별로 편성된 시간제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로 편성된 부대다. 현역이 아닌, 시간제로 근무하는 예비군이다. 전시에는 현역 사단의 부족한 병력을 부대 단위로 보충하게 된다.⁴⁵⁾

VIII. 군사훈련기간

군사훈련기간은 최소 12주 이상이며, 보수는 월 30달러이다. 입영은 19세부터이며, 단위부대에 배치된 후 24개월간 복무한다. 그러나 17세 이상인 자로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지원입대할 수 있다. 현역 복무연한은 육군과 해병대가 3년, 해군과 공군이 4년이다. 현역에 지원하여 2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긴급예비군에 소속될 경우에는 2년을 더 복무하게 되나, 예비군부대에 편성되지 않은 사람은 1년을 더한 3년동안 개별동원 통제요원으로 긴급예비군에 편성되어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장교의 복무기간은 임관일로부터 8년이다. 다만 의사(치과의사포함)은 군의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은 24개월 이상이다.

45) 김주경, 앞의 글, 10면.

VIII. 예비군

예비군체계는 정규적 훈련을 받은 단위병력으로 긴급 예비군(the Selective Reserve)과 훈련을 받지 않고 병력수 부족에 따라 병력확충이 긴급할 때 동원되는 대기예비군(Individual Ready Reserve), 퇴역예비군이 있다. 18세 또는 그 이전에 예비군부대에 지원입대할 경우 6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 및 병 기본훈련을 마친 후 4년간 긴급예비군으로, 2년간 대기예비군으로 총 6년간 예비군에 복무한다.⁴⁶⁾ 2년간의 현역 복무를 마치고 긴급 예비군에 소속될 경우 2년간 복무하며, 예비군부대에 편성되지 아니할 경우 1년을 더한 3년동안 긴급예비군의 개별 동원 통제요원으로 편성되어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6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은 4년간의 긴급 예비군에 복무하는 동안 소속 및 거주지의 변경이 통제되며 3개월간의 기초 근무훈련을 받은 특기요원은 8년간 대기 예비군으로서 직장 및 거주 이전이 통제된다. 현역 복무를 마치면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비상사태 선포시 대기 예비역부터 소집된다.⁴⁷⁾

46) 김문성, 앞의 글, 64면.

47) 김문성, 앞의 글, 64면.

제 3 장 미국의 군복무법제 체계와 내용

제 1 절 군일반법(General Military Law)의 체계

군사법 영역에서 주된 법원(法源)은 연방법이다. 군대의 형태, 조직, 운영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충분하고 독점적이다. 군사법은 「통일군사 재판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과 군인에 대한 법률 조항들 및 병역에 대한 불문법,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정하는 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 군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언제든 군사법을 준수해야 한다.⁴⁸⁾

오늘날 미국의 병무조직체계는 국방부가 주관하는 지원제도(Voluntary System)와 선병청(Selective Service System)이 주관하는 전시대비 징병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선병청은 정부의 독립된 연방행정기관으로서, 그 임무는 국가 비상사태시 즉각 가동 가능한 병역을 등록하고 등급을 판정하며, 현역 임무수행이 가능한 재향군인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다.⁴⁹⁾

미연방법률 제10편 군대(U.S. Code: Title 10 - ARMED FORCES)은 군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하고 있는 법률이고,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A편 군일반법(General Military Law, §§ 101 - 2925), B편 육군(Army, §§ 3001 - 4842), C편 해군과 해병대(Navy and Marine Corps, §§ 5001 - 7921), D편 공군(Air Force §§ 8010 - 9842), E편 예비군(Reserve Components §§ 10001 - 1850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군일반법은 제1부 조직과 무력, 제2부 병력, 제3부 훈련과 교육, 제4부 서비스·공급·조달 등의 총 4부와 101조부터 2925조까

48) Legal Information Institute at the Cornell Law School

(<http://www.law.cornell.edu/wex/military>, 최종 방문일: 2014.12.13)

49) 김문성, 『병무행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병무청 연구보고서, 2005, 62면

제 3 장 미국의 군복무법제 체계와 내용

지의 방대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제2부 병력(PART II – PERSONNEL)^{50)이} 군의 인사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제31장부터 제86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 제31장 입대(§§ 501 - 520c)
- 제32장 장교 병력과 계급 배치(§§ 521 - 528)
- 제33A장 현역 준위의 임명, 진급, 비자발적 제대, 퇴역(§§ 571 - 583)
- 제34장 예비역 장교로의 임명(§ 591)
- 제35장 장교 계급의 일시적 임명(§§ 601 - 604)
- 제36장 현역 장교 계급의 승진, 제대, 및 비자발적 제대(§§ 611 - 647)
- 제37장 일반적인 복무 요구사항(§§ 651 - 656)
- 제38장 합동 장교 관리(§§ 661 - 668)
- 제39장 현역(§§ 671 - 691)
- 제40장 휴가(§§ 701 - 709)
- 제41장 특별한 임명, 과제, 세부사항, 임무(§§ 711 - 722)
- 제42장은 없음
- 제43장 계급과 명령(§§ 741 - 750)
- 제44장은 없음
- 제45장 복장(§§ 771 - 777a)
- 제47장 통합군사법원법(§§ 801 - 946)⁵¹⁾
- 제47A장 군사위원회(§§ 948a - 950t)
- 제48장 군사교정시설(§§ 951 - 956)
- 제49장 다양한 금지와 벌칙(§§ 971 - 987)
- 제50장 다양한 명령 책임(§§ 991 - 994)
- 제51장 예비 병력: 잔류와 승진(§ 1001)
- 제53장 다양한 권리와 이익(§§ 1030 - 1060b)
- 제54장 매점 및 이익교환(§§ 1061 - 1065)
- 제55장 의료 및 치과 시설(§§ 1071 - 1110b)
- 제56장 퇴직자 건강관리기금(§§ 1111 - 1117)

50)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0/subtitle-A/part-II>

51) 10 U.S. Code Chapter 47 -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 제57장 훈장과 포상(§§ 1121 - 1135)
제58장 최근 퇴직한 자에 대한 이익 (§§ 1141 - 1154)
제59장 퇴역(§§ 1161 - 1178)
제60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수행 또는 특정한 이유로 인한 정규
장교의 퇴역(§§ 1181 - 1187)
제61장 신체적 장애로 인한 퇴역(§§ 1201 - 1222)
제63조 만기 전역(§§ 1251 - 1275)
제65조 복무 기간으로 인한 준위의 퇴역(§§ 1293 - 1315)
제67조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 급여(§ 1331)
제69조 퇴직 등급(§§ 1370 - 1376)
제71조 퇴직급여의 계산(§§ 1401 - 1414)
제73조 퇴직 급여에 기초한 연금 (§§ 1431 - 1456_to_1460b)
제74조 군인의 은퇴기금(§§ 1461 - 1467)
제75조 사망자(§§ 1471 - 1491)
제76조 실종자(§§ 1501 - 1513)
제77조 사후 임무 및 임명(§§ 1521 - 1524)
제79조 군사기록의 정정(§§ 1551 - 1559)
제80조 다양한 조사 사항 및 다른 의무(§§ 1561 - 1567a)
제81조 민간인 고용자(§§ 1580 - 1599d)
제83조 민간 정보 직원(§§ 1601 - 1623)
제87조 방위 인력(§§ 1701 - 1764)
제88조 국가족 프로그램 및 군 자녀 보육(§§ 1781 - 1800)

제 2 절 군일반법의 주요내용

I . 입 대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은 다음의 선서를 해야 한다. “나, XXX는, 엄
숙하게 국내외의 모든 적에 대항하여 미국의 헌법을 지지하고 방어할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0.subtitle-A/part-II/chapter-47>, 최종방문일: 2014.
12.15)

제 3 장 미국의 군복무법제 체계와 내용

것을 맹세(또는 확인)합니다. 나는 미국의 헌법에 진실한 믿음 및 충성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규칙과 「통일군사재판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에 따라 나에게 내려진 미국 대통령의 명령과 장교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신이여 도와주소서.”(제502조 제1항). 선서는 대통령, 부통령, 국방부 장관, 장교, 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지정한 다른 사람 앞에서 행해질 수 있다(제502조 제2항).

정신이상, 술 · 마약중독, 또는 중죄(felony)를 범한 것으로 선고받은 자는 어떠한 군대에도 입대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장관은 공적이 있는 경우, 탈영병이나 중죄를 범한 것으로 선고받은 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제504조).

당해 장관은 사정에 따라서, 자격을 갖추고, 유능하며, 신체가 건강한 17세 이상 42세 이하의 자의 정규 육군, 정규 해군, 정규 공군, 정규 해병대 및 정규 해안 경비대에 대한 최초 입대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 이하의 자는, 보호 및 통제의 자격이 있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입대할 수 없다. (b) 개인은 당해 장관이 정한 등급에 따라 정규 육군, 정규 해군, 정규 공군, 정규 해병대 및 정규 해안 경비대에 입대한다. (c) 당해 장관은, 사정에 따라서, 그들의 미성년 기간동안 또는 2년이상 8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규 육군, 정규 해군, 정규 공군, 정규 해병대 및 정규 해안 경비대에 입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 (d) (1) 당해 장관은, 사정에 따라서, 각 호에 정해진 기간동안, 정규 육군, 정규 해군, 정규 공군, 정규 해병대 및 정규 해안 경비대에의 재입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 (2) 재입대하기 전에 군대에서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복무한 사람의 경우, 재입대기간은 2년 이상 8년 이하여야 한다. (3) 재입대 전 군대에서 10년이상 복무한 사람의 경우, 당해 장관은 2년이상 8년 이하의 정해진 기간동안 또는 정해지지 않은 기간동안 재입대를 받아

들일 수 있다. (4) 입대한 인원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 입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제505조).

II.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책

제510조는 입대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대로의 국가의 요구”(National Call to Service)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e)항에 정한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 프로그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시행될 수 있다. (e)항의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1) \$5,000의 상여금 지급, (2) \$18,0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 지급, (3) 12개월간 매월 전업교육을 받는 자에게 지원되는 기초 교육 지원금(\$1,321)에 상응하는 교육 지원금 지급, (4) 36개월간 기초 교육 지원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교육지원금 지급 (\$1,321)(제501조)

제511조는 대학진학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a) 국방부 장관은, 입대 전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받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입대하는 장병의 수와 자격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c) 최대 연기 기간 - 고등 교육을 위한 연기기간은 입대를 수락한 날로부터 3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d) 수당: (1) 고등 교육을 위한 입대 연기 중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학도군사 훈련단 (ROTC)원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등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매월 \$2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료를 보충할 수 있다. (2) 동 조의 수당은 한사람에게 24개월 이상 지급될 수 없다.

그러나 제514조에 의해 포상금과 대체복무는 금지된다. (a) 입대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bounty)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허용된

가족수당, 입대 상여금은 이 항의 목적에서 포상금이 아니다. (b)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

III. 현역 복무

제671조는 훈련을 완료하기 전에는 미국 외의 지역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⁵²⁾ (a) 군인은, 소속된 군대의 필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지 않는 한 미국 및 그 영토 밖에서 현역에 배치되지 않는다. (b) 전쟁 또는 의회나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긴급사태 중에, 필수 기초 훈련기간(또는 그것의 동등물)은, (c) 항을 제외하고는 12주를 넘지 않는다. (c) (1) 12주보다 짧은 기본 훈련(동등한 훈련)기간은, 의료 직군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의료서비스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 당해 장관이 설정할 수 있다.

제673조는 성폭력 혹은 관련 범죄 피해자인 현역 군인의 주둔지 이전 또는 부대 이전을 위한 신청의 고려사항⁵³⁾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a) 적시의 고려 및 조치 - 당해 장관은, 제920조, 제920a조, 또는 제920c조(「통일 군사 재판법」제120조, 제120a조, 또는 제120c조와 같음)에 따른 성폭력 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인 현역 군인이, 주둔지 또는 부대의 이전에 대한 신청을 제출한 경우, 보복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시의 결정 및 조치를 제공할 것이다. (b) 규칙 - 당해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지침의 범위 내에서, 동 조항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의 지침은, (a)에서 기술된 인원이 주둔지 또는 부대 이전을 위해 제출한 신청이, 제출된지 72

52) § 671. Members not to be assigned outside United States before completing training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0/671>)

53) § 673. Consideration of application for permanent change of station or unit transfer for members on active duty who are the victim of a sexual assault or related offense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0/673>)

시간 내에, 그 인원의 부대장에 의해 승인되거나 승인거부되어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신청이 부대장에 의해 부인되는 경우에, 그 인원에게는 지휘 계통에 있는 첫번째 일반 장교 또는 장성에 의해 검토를 요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 결정은 검토를 위한 요구가 제출된지 72 시간 안에 내려져야 한다.

IV. 군복무 규율 유지를 위한 처벌조항

1. 공범에 관한 규율

제877조는 정범의 정의규정이다. 다음의 자는 본장에 의한 벌에 처한다. (1) 본장에 의하여 처벌 받는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그러한 범행을 조력, 교사(선동), 권고, 명령 또는 알선하는 자 (2) 본인이 직접 수행한 경우 본장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를 야기하는 자

본장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범죄가 행하여졌다는 것을 알면서 그의 불안, 재판 또는 처벌을 방해하거나 막기 위하여 범죄자를 받아들이거나 위로하거나 도와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878조).

피고인은 소추된 범죄에 필연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소추된 범죄든 그에 필연적으로 관련된 범죄든 그것을 행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제879조).

제880조는 미수에 관한 규정이다. (a) 본장에 의한 범죄를 범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행위가 단순한 준비 및 도움 을 넘어서는 경우,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범행의 미수가 된다. (b) 본장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범죄를 범하려고 시도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c) 본조의 적용을 받는 자는 재판에서 범행이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범행 미수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제880조).

제881조는 공모에 관한 규정이다. (a) 본장에 의한 범죄를 범한 다른 자와 공모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공모자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공모의 대상(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사법원이 명하는 별에 처한다. (b) 전쟁법에 의한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다른 자와 공모하고, 고의로 공모의 대상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피해자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에게 사망이 초래된 경우 사형 또는 군사법원 또는 군사위원회가 명하는 다른 별에 처하며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사법원 또는 군사위원회가 명하는 사형 이외의 별에 처한다(제881조).

제882조는 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a) 다른 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탈영 또는 본편 상관에 대한 반항을 교사하거나 권유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교사 또는 권유받은 범죄가 시도되거나 행하여진 경우에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벌에 의하여 처벌되나 교사 또는 권유받은 범죄가 행하여지거나 시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법행위가 명하는 별에 처한다. (b) 본편 적 앞에서의 부정행위 또는 선동행위를 하도록 다른 자 또는 다른 자들을 교사하거나 권유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교사 또는 권유받은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벌에 의하여 처벌되나 교사 또는 권유받은 범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법행위가 명하는 별에 처한다(제882조).

2. 부정입대, 탈영, 무단이탈의 금지

제883조는 부정 입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1) 입대 또는 임명 자격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 또는 신중한 은폐에 의하여 군대에 입대하거나 임명되고 그것에 따라서 임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 (2) 제대

자격에 대하여 고의로 혀위 진술 또는 신중한 은폐에 의하여 군대에서 제대하는 자(제883조) 제884조는 불법 입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 규정, 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기 때문에 입대, 임명, 제대에 부적격이라고 알고 있는 자의 입대, 임명, 제대에 영향을 미쳐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군법행위가 명하는 벌에 처한다(제884조).

제885조는 탈영을 엄벌하고 있다. (a) 다음의 군인은 (1) 영구적으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부대, 조직, 근무 장소에서 무단히 나가거나 부재하는 자 (2) 위험한 직무를 피하거나 중요한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부대, 조직, 근무 장소를 떠나는 자 (3) 3군중의 어느 하나로부터 규칙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자신이 규칙적으로 분리되지 는 사실을 충분히 밝히지 않고 3군중 동일한 군대 또는 다른 한 군대에 입대하거나 임명되는 자 또는 미합중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군대에 입대하는 자는 탈영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b) 사임 후 수락 통지 이전에 영구적으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부서 또는 적절한 직무에서 무단히 떠나는 군대 장교는 탈영의 유죄이다. (c) 탈영 또는 탈영 미수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전시에 위반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형 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기타의 벌에 처하나 탈영 또는 탈영 미수가 전시가 아닌 때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사형 이외의 벌에 처한다.

제886조는 무단이탈을 벌하고 있다. 무단히 다음의 행위를 한 군인 (1) 규정된 때에 지정된 근무 장소에 가지 않는 자, (2) 그 장소로부터 나오는 자, (3) 규정된 때에 요구되는 부대, 조직, 근무 장소에 출근하지 않거나 결근 상태를 유지하는 자(제886조)

제888조는 공직자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부통령, 의회, 국방장관, 군사부장관, 국토안보장관, 주지사, 주 의회, 연방, 그가 근무하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영토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단어를 사용하는 장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3. 하극상의 금지

889조에 따라 상급 장교에 대한 불경죄는 처벌을 받는다. 상급 장교에 대하여 불경하게 행동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그리고 제890조에 의해 상급 장교에 대한 폭행 또는 고의적인 불복종을 벌한다. 다음의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직무 수행 중인 상급 장교를 공격하거나 그를 향하여 무기를 꺼내거나 들어 올리는 자 또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 (2) 자신의 상급 장교의 합법적인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복종하는 자는 범죄가 전시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형 또는 군사법원이 정하는 기타의 처벌을 받으며 범죄가 전시가 아닌 때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사형 이외의 벌에 처한다.

마찬가지로 제891조는 준위, 부사관, 하사관에 대한 불복종 행위를 벌하고 있다. 다음의 행위를 하는 준위 또는 사병 (1) 직무 수행 중인 준위, 부사관, 하사관을 공격하거나 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자 (2) 준위, 부사관, 하사관의 합법적인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복종하는 자 (3) 직무 수행 중인 준위, 부사관, 하사관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말 또는 행동이 무례한 자

제892조는 명령 또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하고 있다. 다음의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적법한 일반 명령 또는 규정의 위반 또는 비 준수 (2) 군인이 발한 어떠한 다른 적법한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자신의 직무 수행을 태만히 하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반대로 제893조는 상급자의 학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자신의 명령을 받는 자를 학대, 억압, 냉대하여 유죄로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4. 반란 또는 선동의 금지

제894조는 반란 또는 선동을 금하고 있다. (a) 다음의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합법적인 군 당국을 침해하거나 전복할 목적으로 다른 자와 협력하여 명령을 준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폭력 또는 소란을 야기하는 자는 반란의 유죄이다. (2) 합법적인 행정 당국의 전복 또는 파괴를 야기할 목적으로 다른 자와 협력하여 행정 당국에 대하여 반란, 폭력 또는 기타의 소란을 야기하는 자는 선동의 유죄이다. (3) 자신의 면전에서 행하여지는 반란 또는 선동을 방지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반란 도는 선동에 대하여 상급 장교 또는 지휘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자는 반란 또는 선동을 진압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유죄이다. (b) 반란 미수, 반란, 선동 또는 반란이나 선동을 진압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사형 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기타의 벌에 처한다.

5. 저항, 도주, 탈주 등의 금지

제895조는 저항, 도주, 체포의 침해, 탈주를 벌한다. 다음의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체포에 저항하는 자 (2) 체포를 피해서 달아나는 자 (3) 체포를 압도하는 자 (4) 구류 또는 감금을 피해서 달아나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897조 불법 감금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자를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898조는 절차적 원칙의 불복종을 금지한다. 다음의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본장에 의한 범죄로 소추된 자에 관한 사건의 처리에 있어 불필요한 지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 (2)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전, 재판 중, 재판 후에 절차를 규정하는 본장의 규정의 이행 또는 준수를 고의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6. 적 앞에서의 부정행위 금지

제899조는 적 앞에서의 부정행위를 금하고 있다. 적의 앞 또는 면전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군인 (1) 도주하는 자 (2) 자신이 지킬 의무가 있는 사령부, 부대, 지역 또는 군대 재산을 불명예스럽게 포기, 항복하거나 넘겨주는 자 (3) 불복종, 태만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통하여 사령부, 부대, 지역 또는 군대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 (4) 자신의 무기 또는 탄약을 버리는 자 (5) 비겁한 행동을 하는 자 (6) 약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자 (7) 군대의 통제 하에 있는 사령부, 부대 또는 지역에서 허위 경고를 야기하는 자 (8) 교전, 포획 또는 파괴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인 적의 군대, 전투원, 배, 항공기 또는 기타의 것들에 대하여 교전, 포획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고의로 전력을 다 하지 아니하는 자 (9) 전투에 가담한 경우 미합중국 또는 그 동맹국에 속하는 군대의 부대, 전투원, 배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구제 및 원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 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기타의 벌에 처한다.

7. 항복강요에 따른 복종금지

제900조는 항복 강요에 따른 복종을 금지하고 있다. 어떠한 지역, 배, 항공기, 기타의 군대 재산 또는 군인의 신체를 지휘관으로 하여금 적에게 넘겨주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여 본장

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적절한 권한 위임 없이 적에 대한 깃발을 치워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사형 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기타의 벌에 처한다.

8. 암호사용 및 스파이 금지

제901조는 암호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시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암호 또는 군호를 제시하거나 암호 또는 군호를 받고 사용할 자격이 있는 다른 자에게 자신이 아는 한에 있어서는 확실히 자신이 권한을 부여받아 제시하여야 할 암호 또는 군호와는 다른 암호 또는 군호를 제시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사형 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기타의 벌에 처한다.

제902조는 안전장치의 강제 개폐를 벌하고 있다. 안전장치를 강제로 열어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군사법원이 명하는 기타의 벌에 처한다.

제906조는 스파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전시에 군대의 통제 또는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지역, 배 또는 항공기의 내부 또는 근처, 미합중국의 전쟁 수행을 돋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조선소, 제조공장, 산업플랜트 또는 기타의 장소 또는 기관의 내부 또는 근처에서 스파이로서 잠복하거나 활동하다가 발견된 자는 최고 군사법원 또는 군사위원회의 재판에 회부되며 유죄인 경우 사형에 처해진다. 본조는 본 편 제47A장에 의하여 설치된 군사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간첩죄

제906a조는 별도로 간첩죄를 두고 있다. (a) (1) 미합중국에 피해를 주거나 외국 국가에 이익을 주는데 사용되도록 할 목적 또는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를 가지고 (2)에 규정된 실체에 대하여 (3)에 규정된 사항들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달, 배달하거나 보내거나 또는 그러

제 3 장 미국의 군복무법제 체계와 내용

한 것들을 시도하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단, 피고인이 (A) 핵무기, 군사 우주선 또는 인공위성, 조기 경보시스템 또는 대규모 공격에 대한 방어 또는 공격 수단, (B) 전쟁 계획, (C) 통신 정보 또는 암호 정보, (D) 기타의 주요 무기 시스템 또는 주요 방위전략 요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피고인은 사형에 처하거나 군사법원이 명하는 기타의 벌에 처한다. (2) (1)에 언급된 실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외국 정부, (B) 미합중국이 승인을 하였든 하지 아니하였든, 외국 내의 당파, 정당, 군대 또는 해군, (C) 그러한 정부, 당파, 정당 또는 군대의 대표, 관리, 대리인, 피고용인, 그 지배하에 있는 자 또는 시민, (3) (1)에 언급된 사항이라 함은 국방과 관련된 문서, 서류, 전신 암호책, 암호표, 스케치, 사진, 네거티브, 청사진, 설계도, 지도, 모형, 메모, 도구, 기기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b) (1)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본장에 의한 범죄를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다. (A) 군사법원 구성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적어도 (c)에 규정된 악화시키는 요소들 중의 하나라고 판결하는 경우 (B) 구성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c)에 규정된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악화시키는 상황이 정상이 참작되거나 경감되는 상황을 충분히 뛰어넘는다고 판결하는 경우 (2) 판결은 다음에 의거할 수 있다. (A) 유죄 또는 무죄의 결정에 제출된 증거 (B) 선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된 증거 (C) 그러한 모든 증거

(3) 피고인에게는 정상참작 및 경감에 있어 광범위하게 문제를 제출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c) 사형 선고는 군사법원 구성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서 다음의 악화 요소들 중의 하나 이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조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다. (1) 피고인이 제정법에 의하여 사형 선고 또는 종신 형이 인정되는 간첩활동 또는 반역죄와 관련되는 다른 범죄로 유죄판

결을 받은 경우 (2) 범죄를 행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국가 안전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 (3) 범죄를 행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망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 (4) 본편 제836조(개정 제36조)에 의한 규정으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기타의 요소

10. 음주 및 약물금지

제907조는 허위의 공식 진술을 금하고 있다.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기록, 통계표, 규정, 명령 또는 기타의 공식적 문서에 서명하거나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기타의 허위의 공식적 진술을 하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12조는 근무 중 음주를 벌하고 있다. 보초 또는 경계 이외에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무 중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12a조는 규제 약물의 오용, 소지 등을 금하고 있다. (a) (b)에 규정된 약물을 오용, 소지, 제조, 배포, 미합중국 세관영토내로 수입,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출, 군대의 통제에 의하거나 통제 하에서 사용되는 군사시설, 배, 자동차, 항공기에 반입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b) (a)에서 언급되는 약물은 다음의 것이다. 특정 생리 적 증거의 정밀 검사를 위한 절차 (1) 아편,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메타암페타민, 펜시클리딘, 바르비투르산, 대마초 및 그러한 약물의 화합물 또는 파생물 (2) (1)에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규제 약물 일람표에 들어 있는 약물 (3) (1)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2)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목록에 들어 있지 않지만 「규제 약물법 (Controlled Substances Act (미국법전 제21편 제812조))」 제202조의 부칙 I 내지 V에 들어 있는 기타의 약물

11. 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913조는 보초의 부정행위를 금한다. 근무 중 음주 또는 수면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정기적으로 근무 해제되기 이전에 이탈한 보초 또는 경비병은 그 범죄가 전시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형 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하나 범죄가 전시 이외의 시기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사형 이외의 벌에 처한다.

제914조는 군대 내 결투를 금지하고 있다. 싸움이나 홍보를 하거나, 결투에 관여하거나 공모하거나, 보냈거나 막 보내려고 하는 도전에 대하여 알면서 관계 당국에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15조는 업무, 의무 또는 서비스를 피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가병, 신체적 무력, 정신적 쇠약, 정신착란 (2) 고의적 자해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16조는 폭동 또는 치안 방해를 금한다. 폭동 또는 치안 방해를 야기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17조는 도발적인 연설 또는 제스처를 금지하고 있다.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도발적이거나 비난적인 단어 또는 제스처를 사용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12. 살인행위 금지

제918조는 고의적 살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화 사유 또는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살해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다음의 경우 (1) 계획된 살해 의도가 있는 경우 (2) 살해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는 경우 (3)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여 인간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경시하는 것이 분명한 행위를 하는

경우 (4) 주거침입, 항문성교, 강간, 아동 강간, 성폭행, 아동 성폭행, 가중된 성적 행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강도, 방화의 범행 또는 범행 시도를 하는 경우 살인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단, (1) 또는 (4)에 의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명하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한다.

제919조는 과실에 따른 살인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a) 살해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줄 목적으로 적절한 도발에 의하여 갑작스러운 열정이 한창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b) 살해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줄 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살해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중과실에 의하여 (2) 본편 제918조(개정 제118조) (4)에 정한 것 이외의 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는 고의적인 살인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에서 명하는 벌에 처한다.

13. 각종 성범죄 등의 금지

제920조는 일반적인 강간 및 성폭행을 처벌하고 있다. (a) 강간 – 다음의 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다른 자에 대하여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자에 대하여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힘을 사용하는 행위 (3) 위협하거나 다른 자를 사망, 심각한 신체적 위해 또는 납치될 것 같은 공포 상태에 두는 행위 (4) 다른 자로 하여금 처음으로 의식을 잊게 만드는 행위 (5)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에 의하거나 그자의 인식이나 동의 없이 마약, 취하게 하는 것 또는 유사한 다른 약물을 먹게 함으로써 행동을 평가하거나 통제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는 강간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b) 성폭행 – 다음의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다음의 행위에 의하여 다른 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자 (A) 다른 자를 위협하거나 또는 공포 상태에 두는 행위 (B) 다른 자에 대하여 신체적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 (C) 성적 행위가 전문직업적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의 표현을 하는 행위 (D) 책략, 속임수 또는 은닉에 의하여 어떠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믿게 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이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거나 또는 무리 없이 알았음이 틀림없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자 (3) 다른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자 (A) 마약, 취하게 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약물에 의하여 손상을 입었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가 그러한 상황을 알거나 무리 없이 알았음이 틀림없었을 것 (B) 정신적 장애나 결함 또는 신체장애가 있었으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가 그러한 상황을 알거나 무리 없이 알았음이 틀림없었을 것은 성폭행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c) 가중된 성적 접촉 – 다른 자에 대하여 성적 접촉을 하거나 다른 자에 의한 성적 접촉을 야기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a) (강간)를 위반하여 성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 행위를 저지른 바와 같이 가중된 성적 접촉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d) 남용된 성적 접촉 – 다른 자에 대하여 성적 접촉을 하거나 다른 자에 의한 성적 접촉을 야기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b) (성폭행)를 위반하여 성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 행위를 저지른 바와 같이 남용된 성적 접촉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e) 위협의 입증 – 본조에 의한 소추에 있어 어떠한 자가 위협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그자가 실제로 위협의 행사를 의도하였거나 위협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f) 항변 – 피고인은 본장 또는 군사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한 소추에 있어 결혼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1) 성적 행위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음경과 여성의 외음부, 항문 또는 구강 간의 접촉을 의미하며 본목의 목적을 위하여 음경과 관련된 접촉은 약간 일지라도 침투 시에 발생한다. (B) 다른 사람을 학대, 모욕, 괴롭히거나 비하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 또는 다른 물건에 의해 약간 일지라도 다른 여성의 외음부, 항문 또는 구강에 침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성적 접촉 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다른 사람을 학대, 모욕 또는 비하할 목적으로 그자의 성기, 항문, 사타구니, 가슴, 허벅지 안쪽 또는 둔부를 직접 또는 옷을 통하여 만지거나 그자로 하여금 만지도록 하는 행위 (B)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직접적이든 옷을 통해서든 그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그자로 하여금 만지도록 하는 행위 만지는 것은 신체의 일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신체적 상해 라 함은 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포함하여 약간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지는 것을 의미한다. (4) 중대한 신체적 상해라 함은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의미한다. 골절, 탈골, 깊은 상처, 신체 일부의 찢어짐, 장기 기관에 대한 심각한 손상 및 기타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포함한다. 눈 주위의 멍 또는 코피와 같은 경미한 손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폭력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무기의 사용 (B) 사람을 압도, 감금하거나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한 체력 또는 폭력의 사용 (C) 피해자를 강제로 굴복시키기에 충분한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것

(6) 불법적인 폭력 이라 함은 법적 정당화사유 또는 이유 없이 행하여지는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7) 다른 자를 위협하거나 공포상태에 두는 것 이라 함은 따르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대화나 행동에 의하여 예상되는 불법행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타당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화 또는 행동을 의미한다.

(8) 동의 (A) “동의”라 함은 능력이 있는 자가 문제의 행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승낙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한 동의 부재의 표시는 동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두 또는 신체적 저항의 부재,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포상태에 둠으로써 초래된 굴복은 동의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현재 또는 과거의 데이트, 사회적 또는 성적 관계, 문제의 행동에 있어 피고인과 관련된 자의 드레스 매너는 동의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B) 잠이 들거나 의식이 없는 자 또는 무능력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 무의식 상태를 초래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위협 또는 공포 상태에 있거나 (b)(1)의 (C) 또는 (D)의 상황 하에 있는 동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C) 동의의 부재는 범행 상황에 근거하여 추론될 수 있다. 어떠한 자가 동의를 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다른 자의 행동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거나 저항을 중단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모든 주변 상황이 고려된다.

제920a조는 스토킹을 벌하고 있다. (a) 다음에 의하여 본조의 적용을 받는 자 (1) 특정한 자를 향한 행위의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여 합리적인 사람에게 자신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사망 또는 성폭력을 포함하는 신체적 위해의 공포를 야기하는 자 (2) 특정한 자가 자신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사망, 성폭력을 포함하는 신체적 위해에 관한 상당한 공포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자

(3) 그의 행위가 특정한 자에게 자신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사망 또는 성폭력을 포함하는 신체적 위해에 관한 상당한 공포를 유발하는 자는 스토킹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b) 본조에서 (1) “행위의 과정”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특정한 자에 대한 시각적 또는 신체적 접근을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것 (B) 특정한 자를 향한 언어적 위협, 서면의 위협, 행동에 함축된 위협 또는 그러한 위협들의 조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 (2) “반복적”이라 함은 행위와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가 두 번 이상임을 의미한다. (3) “직계가족”이라 함은 특정한 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다른 가족 구성원, 친척, 그자의 세대 내에 정규적으로 거주하는 친밀한 파트너 또는 행위 개시 전 6개월 이내에 그자의 세대 내에 정규적으로 거주한 자를 의미한다.

제920c조는 기타 성폭력행위를 금지한다. (a) 저속한 내용 보여주기, 시각적 기록, 방송 – 법적 정당화사유 또는 법적 권한 위임 없이,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자가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합리적 기대를 가지는 상황에서 그자의 사적인 영역을 고의로 보여주는 자 (2)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자가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합리적 기대를 가지는 상황에서 그자의 사적인 영역을 수단으로 하여 고의로 사진촬영, 비디오 녹화, 영화 촬영 또는 녹음하는 자 (3) (1)과 (2)의 상황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무리 없이 알았었을 기록을 고의로 방영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본조에 의한 범죄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b) 강제적 매춘 – 어떠한 자로 하여금 매춘행위에 종사하게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강제적 매춘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c) 공연 음란 – 고의로 점잖지 못한 방법으로 성기, 항문, 둔부 또는 여성의 유분이나 유두를 노출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공연 음란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d) 용어의 정의 – 본조에서 (1) 매춘행위 – “매춘행위”라 함은 어떠한 자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거나 그 자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행하여지는 본편 제920(g)조(개정 제120(g)에서 정하는)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의미한다. (2) 사적 영역 – “사적 영역”이라 함은 벌거벗었거나 속옷만 입은 채로의 성기, 항문, 둔부 또는 여성의 유륜이나 유두를 의미한다. (3)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 “다른 사람이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는 상황”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의 사전 영역에 대한 이미지가 캡처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사적으로 벗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 (B)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의 사적 영역이 공중에게 보여질 수 없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 (4) 방송 – “방송”이라 함은 어떠한 자 또는 어떠한 자들에게 보여지도록 할 목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5) 배포 – “배포”라 함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송을 포함하여, 다른자의 실제적 또는 의제적 점유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점잖지 못한 방법 – “점잖지 못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인 예의 수준에 비하여 심하게 저속하거나 외설적이며 혐오스러운 성적 불순과 관련된 부도덕성의 형태가 되어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관계에 관한 도덕성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제923조는 문서위조를 금지한다. 사취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진짜일 경우 명백하게 다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거나 그의 법률상의 권리 또는 책임을 변경하여 불리하게 하도록 문서를 허위로 만들거나 그 일부 또는 서명을 변경하는 자 (2) 그렇게 작성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 문서를 유통시키거나 제공하거나 발행하거나 전달하는 자는 문서위조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24조는 불구로 만드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상처를 입히거나 외관을 손상하거나 불구로 만들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다음의 피해를 주어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절단에 의하여 그 자의 외관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자 (2) 어떠한 자 또는 그 신체기관을 훼손하거나 불구로 만드는 자 (3) 어떠한 자 또는 그 기관을 손상함으로써 그의 신체적 활력을 심각하게 감소시키는 자는 불구로 만드는 행위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25조는 강제적인 항문성교를 금지한다. (a) 항문성교 – 폭력에 의하거나 다른 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동성 또는 이성의 자와 비정상적인 성교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강제적인 항문성교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b) 수간 – 동물과 비정상적인 성교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수간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c) 위반의 범위 – 경미할지라도 침투가 행하여지면 (a) 또는 (b)의 범죄를 완성하기에 충분하다.

14. 각종 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926조는 방화를 금지하고 있다. (a) 고의 및 악의로 살고 있는 집, 이동식 또는 고정식의 기타의 구조물을 연소시키거나 불을 질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당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가중된 방화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b) 고의 및 악의로 다른 자의 재산을 연소시키거나 불을 질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a)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방화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27조는 강탈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가치, 면제, 이익,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위협의 의사를 전달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강탈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28조는 폭행죄를 처벌하고 있다. (a)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힘 또는 폭력을 제공하거나 시도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그 시도 또는 제공이 완성되었든 되지 않았든 폭행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b) 다음의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위험한 무기 또는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기타의 수단 또는 폭력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자 (2) 무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을 하고 고의로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자는 가중된 폭행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30조는 주거침입죄를 처벌하고 있다. 침입하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건물 또는 구조물에 들어가서 본조의 적용을 받는 자는 주거침입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15. 위증죄 등의 금지

제931조는 위증죄를 처벌하고 있다. 사법절차 또는 재판과정에서 고의 및 부패에 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 (1) 합법적인 선서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대신하도록 허용되는 어떠한 형식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위증 자료를 제공하는 자 (2) 제28편 제1746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위증의 벌에 의한 신고, 증서, 증거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위증 자료를 기입하는 자는 위증의 유죄이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32조는 미합중국에 대한 기망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본장의 적용을 받는 다음의 자 (1) 허위 또는 기망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 (A) 미합중국 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자 (B) 승인 또는 지급을 위하여 미합중국 또는 그 공무원에 대한 청구를 공무원 또는 병역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자 (2) 미합중국 또는 그 공무원에 대한 청구의 승인, 허가 또는 지급을 얻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 (A) 허위 또는 기망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문서 또는 기타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자 (B) 선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어떠한 사실, 문서 또는 기타의 서류에 대하여 선서하는 자 (C) 어떠한 문서 또는 기타의 서류에 한 서명을 위조하거나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서명을 사용하는 자 하는 자 (3)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거나 군대를 위하여 마련된 미합중국의 과세금, 보유 재산을 보유하거나 현금 또는 기타의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면서 고의로 그것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은 금액보다 더 적은 액수를 교부하는 자 (4) 군대에 공급하거나 군대를 위하여 마련된 미합중국 재산의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교부할 권리가 있으면서, 그 서류에 포함된 진술의 진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미합중국을 기망할 목적으로 어떠한 자에게 그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교부하는 자는 유죄인 경우 군사법원이 명하는 벌에 처한다.

제934조는 일반조항으로서 본장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군대의 훌륭한 질서 및 규율에 불리한 모든 무질서 및 태만, 군대에 불신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지는 모든 행위 및 중요하지 않지만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가 유죄일 수 있는 범죄는 범죄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고등 군사법원, 특별 군사법원 또는 약식 군사법원에 의하여 다루어지며 그 법원이 정하는 벌에 처한다.

V. 평 가

미군의 군복무를 규율하는 군일반법은 매우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군입대부터 제대까지의 기간, 그리고 퇴역 이후의 연금 까지 포함하여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앞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입대 제한 자격을 엄격하게 법률로써 규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의 입대를 사전 차단하고 있고, 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한편, 군복무 규율 유지를 위해 처벌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군복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병영부조리 금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병영 내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태도를 갖고 있다.

제 4 장 한국의 군복무법제에 대한 시사점

제 1 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복무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I .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

현행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군인복무규율에 의하여 군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법률에 의한 지배라는 법치주의에 반하며, 의회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안홍준의원 등 10인이 ‘군인사법 개정안’을 제안한 상태이다.

동 법률안은 군 내 인권침해가 방조되고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병 간의 사적제재가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온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군인 간에는 구타 · 가혹행위 · 언어폭력 등의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지휘관 · 상관으로 하여금 사적 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 ·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고자 군인사법 제47조의2를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군인복무규율과 병영생활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법률에 조문 1개로 담은 정보에 불과할 뿐, 이를 통한 군대 내 병영부조리의 근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인사법이라는 현행법의 개정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1.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안

(1) 주요내용

2005년 국방부에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가 민·군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는바, 개선과제로 구체적으로 9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9개의 주제는 인간중심의 장병 가치관 정립, 자기 계발 여건 조성, 군복무 인센티브 부여, 장병 인권 보장, 자율적 생활 보장, 선진형 리더쉽 개발, 복무 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병영 시설 개선 과제였다. 9개의 주제 모두가 병사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 서도 장병인권 보장은 민주주의 군대의 전투력 핵심은 장병인권 보장에 있다는 인식하에 장병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혁신적으로 강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기본권 보장, 고충처리 소청권, 부대 재배치 청구권 등)을 위한 규정과 ‘전투원’으로서 군인의 권리 제한 및 의무사항(정치적 행위 제한, 충성의 의무, 명령 복종 및 실행의무 등)을 명시한 가칭 “군인복무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2005년 국방부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에서의 민·군 합의 내용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되었고, 동법 제32조 제4항에서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에서의 민·군 합의 후속조치로 정부에서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입안하여 2007. 7. 31.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 8. 1.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 처리

가 미루어져 오다가 2008. 5. 29.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법안은 자동 폐기 되었다.

당시 자동 폐기된 위 군인복무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 군인복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장관급장교(將官級將校)나 군인복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안 제7조)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지 못하도록 하되,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내대기가 가능하도록 한다.(안 제14조) 군인의 복무에 관한 불만이나 고충을 보다 쉽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별로 전문상담관을 두도록 한다.(안 제18조) 군인은 구타,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은 다른 병에게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 밖에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안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2) 검 토

정부에서 입안하였던 군인복무기본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인복무규율보다 약간 진전된 형태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지만, 매우 미흡하고 불완전하다. 즉 군인의 권리보장 및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군인의 의무 및 권리 객체성만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말미암아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2. 군인권법안

(1)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의원 외 11인이 2014년 12월 2일 ‘군인권법’을 제안한 상태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12월 4일 회부된 상태이다.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법률의 목적을 군인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군인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군인의 권리 체계를 확립함으로 한다(안 제1조). 법률의 기본이념을 정함에 있어, 모든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며, 자유 · 인권 및 평화의 존중이 군인정신과 민주적 군대의 바탕임을 인식하고, 국군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으로 하여금 문명국가의 법 원칙을 준수하고 민주적 국가와 사회에 충성하도록 지도하는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지휘이념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안 제2조).

그리고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로서,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및 병(兵)으로,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하는 등 정의한다(안 제3조). 법률의 적용 범위로서 군인에게 적용하되,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안 제4조).

국가는 국가의 책무로서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의 노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이 국군의 사명임을 확인하고, 모든 군인이 군

제 1 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복무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군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복무 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침해된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안 제5조).

모든 군인은 다른 군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병영생활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6조). 군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관련한 군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한다(안 7조).

모든 군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로서의 인격권을 가진다(안 제8조).

모든 군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되거나 박탈되지 아니하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9조). 모든 군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임면·보직 및 진급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여성인 군인에 대하여 남성인 군인과의 임면·보직 및 진급 등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안 제10조).

모든 군인은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모든 군인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지며,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안 제11조). 모든 군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 여행의 자유는 존중되고, 현역병, 군 복무 예비역·보충역, 직무수행

제 4 장 한국의 군복무법제에 대한 시사점

장교·준사관·부사관, 교육훈련,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천재지변·재해 및 외국 군인 파견 등에 한하여 영내거주 또는 내무생활을 하도록 하며, 국외 경조사, 질병치료 또는 국외 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군사기밀 보호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2조). 모든 군인은 전시·사변 등 비상시나 천재지변·재해 등 긴급한 사태 발생시가 아닌 평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는 근무(작업)하지 아니하고, 자기계발의 권리를 가지며, 자유시간의 보장을 통해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안 제13조).

모든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고, 군인의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용모와 복장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내무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안 제14조).

군인의 인사기록 등 개인기록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 및 이용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의견·평가 등이 기재시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여 개인기록에 기재 할 수 있다(안 제15조).

모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자유를 가지고,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각종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안 제16조).

모든 군인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에 반하여 부당한 직무수행 을 강요받지 아니한다(안 제17조). 모든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의식 및 종교행사 등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하나 종교의 교리나 종교생활을 이유로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고, 부대 내외부 의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안 제18조).

제 1 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복무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모든 군인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발표 또는 출판될 경우 군사보안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한될 수 있다(안 제19조). 모든 군인은 순수한 학술·문화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군무(軍務)에 영향을 줄 목적의 결사(結社) 및 단체행동 및 종적으로 계열화된 임관(任官) 구분의 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안 제20조).

모든 군인은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고 인간의 존엄에 걸맞는 의복·급식 및 주택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지고, 휴가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군 복무와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및 자유시간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진료·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의 부상·사망에 대비한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등의 보훈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안 제21조).

모든 군인은 가족 및 외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고, 가족과 그 대리인은 부대·기관(지휘관·상관·동료 등 관계자 포함)에 대하여 방문 및 출입 등의 접근권을 가지며,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과 그 대리인은 해당 부대·기관(사망·부상 현장, 지휘관·상관 및 동료 등 관계자와 관련 군수사기관을 포함)에 대하여 방문 및 출입 등의 접근권을 가진다(안 제22조).

모든 군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군인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항과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 담당자나 지휘관은 정치적·역사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군인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네바협약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 인도(人道)에 관한 국제인도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지휘관은 부하에게 국제인도법을 교육할 의무를 진다(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되는 사람,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기본적 인권 교육은 교육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 해당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장은 학교규칙에 따라 실시하며, 기본적 인권 교육의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안 제23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군인의 인권침해·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방감독원을 두며, 국방감독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안 제24조).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무여건,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충 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고충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안 제25조).

지휘관은 예하 군인들에게 권리 구제방법이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군인은 권리구제의 청구, 정당한 불복수단의 활용 및 인권보호 목적의 시민·사회단체 접촉·활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절차 및 권리구제가 원활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고충 처리와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고충 처리와 권리구제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26조).

(2) 검 토

위 법률안은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나,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법률에

옮겨 놓은 경우가 많고, 군대 내 만연하고 있는 병영부조리의 구체적인 태양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미비한 편이다. 자칫 추상적 규범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제 2 절 군복무법제 개선방향

현재 군인복무법제 개선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1. 기존의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2. 새로운 법률을 만들는 방안 중 (1)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는 안과 (2) 군인권법을 제정하는 안이 있는 상태이다.

이들 중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안은 현재의 군인복무규율과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내용을 법조문 1개로 옮겨 놓았을 뿐, 군대 내 발생하고 있는 부조리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군인복무기본법안 역시 군인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데 치중하고 있고, 군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군인권법안의 경우 군인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고심한 적은 있으나, 자칫 추상적 규범에 그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법률에 그대로 옮겼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병영부조리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군일반법은 매우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입대부터 제대까지 군생활의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집대성한 단일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간의 법체계의 차이점 때문에 굳이 모방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군복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군인권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군인복무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구성해 명실상부한 군인복무에 있어서 기본법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악습과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군형법에서 규

제 4 장 한국의 군복무법제에 대한 시사점

을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실태조사와 군장병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군대 내 성폭행·폭력행위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자살 및 총기난사 등의 사건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2006년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가 제안했던 ‘군인복무기본법’을 8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반복해서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군대 내에서 사건·사고는 연이어 발생하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대형사건이 터졌을 때에만 군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며 민관 합동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대안으로 현재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제정하여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2006년과 2014년이라는 8년의 시간차만 두고 있을 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임기응변식의 해결책으로는 군대 내 만연한 병영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기적으로 병영부조리에 기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동일한 해법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악습을 철폐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후진적인 병영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군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군의 본연의 임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는 국방력의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군은 시대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군은 군인들이 군복무라는 특수성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장받고 있는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진력을 다해야 한다.

제 5 장 결 론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을 그대로 옮겨놓은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군대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각종 병영부조리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 태양들을 금지할 수 있는 군인복무기본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역사병과 군간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시민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군대 내 뿐만 아니라 깊게 만연하고 있는 각종 병영부조리들을 조사한 후 법 규범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률적 대안을 마련해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적 신뢰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김주찬/ 선종렬, “병역제도 변화요인 분석: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2008년 동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08.

김문성, 『병무행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병무청 연구보고서, 2005.

김문성, “병역체계에 관한 비교정책적 분석: 남한, 북한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5,3, 한국행정학회, 1990.

남궁곤/ 김근혜, “미국의 모병제 도입 연구: 낙순 행정부의 수정병역법(1971) 입법적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2 .

오동렬, 『각국의 병역제도 연구』, 병무청, 1990.

정혜인, “모병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Lawyers association journal, 63(4), 법조협회, 2014 .

평화인권연대, 『미국의 병역제도』, 월간평화연대, 2006.

Bachman, Jerald G., John D. B. Blair and David R. Segal, The All-Volunteer Force: A Study of Ideology in the Miliar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7.

Cooper, Richard V. L., Military Manpower and the All Volunteer Forc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77.

Friedberg, Aaron L., In the Shadow of the Garrison State: America's Anti-Statism and Its Cold War Strate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참 고 문 헌

Magruder, Carter B, Report of the Task Force on the Structure of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Washington D.C., 1967.

Rostker, Bernard D., The Evolution of the All-Volunteer Force, Santa Monica: RAND, 2007.

Witherspoon, Ralph Pomeroy, The Military Draft and the All-Volunteer Force: A Case Study of a Shift in Public Policy. Blacksburg, Va.: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1993.

참고사이트

<http://ko.wikipedia.org> (위키백과)

<http://www.defense.gov> (U.S. Department of Defence)

<http://www.globalfirepower.com> (Global Firepower: GFP)

<http://www.mma.go.kr> (국방부 청)